

"건강한 육체, 건강한 정신"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/전화(02)731-6493~4 /전송731-6460 /담당 김윤식

문서번호 진흥 82120- 218

시행일자 '95. 10.

(경유)

수신 (제 1 안)

참조 내부결재



취급		시	장
보존	년	100 /	
내무국장	전결		
사회진흥과장	ㄴ	법무담당관실사필	
체육시설계장	ㄴ		
기안	김윤식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, 상업및 부속시설사용료의 조정에따라 별첨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첨부 1.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(안) 1부.
- 2.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 1부 .끝.

(제 2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협의

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별첨 개정안을 마련 송부하니 '95.10.20까지 사회진흥과장 참조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한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함.)

- 첨부 1.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 1부 .끝.

# 서울특별시

수신처 서기 01, 서관 01-02, 서국 01-13, 서구 1-25(생활체육과,사회진흥과장)

서사 04

221

*(Handwritten mark)*

216

진흥 82120-

'95. 10.

( 제 3 안 )

수신 공보1담당관

제목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 
별첨과 같이 송부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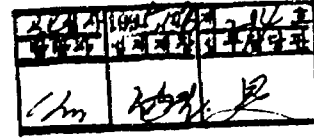
첨부 공고(안) 2부 끝.

사 회 진 흥 과 장

222

~~222~~

217



## 공 고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5 - 276 호

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5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장

### 1. 개정취지

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전용사용료, 개인연습사용료, 상업 및 부속시설사용료가 유사 타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가격으로 책정되어있어 이를 조정하고,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법에서 운동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에따라 조례의 명칭과 본문내용 중 운동시설 또는 운동장시설은 체육시설로 하고, 각 단위시설별 관리책임자로 혼동할 수 있는 해당시설관리책임자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함.

- 나.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, 생활체육교실 강습프로그램의 월사용료는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시되는 사용료에 의하도록 함.
- 다. 장기간 요금동결과 유사 타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가격으로 책정되어있는 체육시설사용료 중 전용사용료 평균13.3% , 개인연습사용료 평균28.5% 를 상향조정하고, 상업 및 부속시설사용료에 영화촬영료, 전광판사용료 등을 신설하여, 체육시설의 수준향상과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코자 함.
- 라.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청소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함.
- 마. 현행 조례규정상 당일 또는 익일 12:00까지로 되어있는 체육시설사용료 정산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경기(행사)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입토록 현실화 함.
- 바. 체육시설 사용개시와 사용종료에 대한 췌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료 정산 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,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경기(행사)의 관련시설 설치작업시부터 경기 후 철거완료시까지로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1995. 10.31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작성)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사회진흥과장, 전화번호 731 - 649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전화번호